

□ **사업 개요**

- 경기의 변동,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·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

□ **지원대상**

- 생산량 감소·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①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②한 후 휴업,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③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,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④ 사업주

① **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*

\* 기준달 : **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**

1.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% 이상 증가
2.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(또는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,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)대비 15%이상 감소
3.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(또는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,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)대비 15%이상 감소
4.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
5.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·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
6.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
7.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
8. 당해 업종·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**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**

※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: **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되는 경우 지원 여부 판단,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해 기준달 개념을 인용치 않고 지원유무 판단 가능하며,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의 경우 제8호를 적용하여 지원**

##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

-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,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
  -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
## 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

휴업	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 시간이 20/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
휴직	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훈련	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,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

## 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,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(첫날부터 종료일)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.

## ⑤ 지원제외 사유

-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

-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매출액,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,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 제외

**□ 지원수준 및 절차**

**■ 지원수준**

구분	지원수준
휴업	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) 지원 ※ 단,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% 이상인 경우 2/3지원
훈련	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/4(대규모기업 2/3)와 훈련비 지원
휴직	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)지원

※ 고용유지 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3천원

**■ 지원기간**

고용유지조치의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

**■ 지원절차**

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월(曆月)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(사업주) ▶ 고용유지조치 실시(사업주) ▶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▶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센터)

□ 문의 방법

-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, 궁금한 사항은 사업체의 관할 고용센터  
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
  
- (인터넷) 고용보험 홈페이지(<http://www.ei.go.kr>) 기업회원가입 후  
→ 기업서비스 → 고용안정지원금 → 고용유지지원금
  
- (전화)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**국번없이 1350**)  
→ 고용유지지원금 문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 안내